

의안번호	2206065
의 퇴 인	정희용의원
회 답 일	2024.1.6.
추 계 번호	24D56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2025년~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추가재정소요는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 중위소득의 32%(생계급여) 수준으로 보면 1조 4,925억원(연평균 2,985억원),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채무자 회생 기준 생계비) 수준으로 볼 경우 4조 8,244억원(연평균 9,649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수당 인상	32%	1,491	2,723	3,731	3,569	3,413	14,925	2,985
	60%	4,787	8,745	11,981	11,566	11,165	48,244	9,6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7항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1인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제7항 (참전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액은 제7항에 따른 지급액의 100분의 50이 되어야 함(제8항)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9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7항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인상	○	-
2	안 제6조제7항 (참전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	지방자치단체별 참전유공자 수 및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당 단가 관련 자료 취득의 어려움으로 추계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만 발표하고 있고 최저생계비는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산정) 등 두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추계함
-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안 제6조제7항)

(1) 대상자 수

-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2023년 연말 기준 13만 2,479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7% 감소

[표 2]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감률
지급인원(명)	190,329	173,733	161,577	146,932	132,479	-8.7

자료: 국가보훈부

-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8.7%를 적용하여 2025~2029년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110,527	100,955	92,212	84,227	76,9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현황: 2019~2023년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월 지급액	300	320	340	350	390	420	7.0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7.0%를 적용하여, 현행법 적용 시 추계기간 동안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5]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 2025~2029년

(단위: 천원,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증감률
월 지급액	450	481	515	551	590	7.0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만 발표하고 최저생계비는 발표하지 않고 있어, 추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산정) 등 두 개의 시나리오로 계산
- 최근 5년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6]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추이: 2020~2024년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기준중위소득	1,757	1,828	1,945	2,078	2,228	6.1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기준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채무자 회생 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7]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추정: 2025~2029년

(단위: 천원,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증가율
기준중위소득	2,365	2,510	2,663	2,826	2,999	6.1
32%	757	803	852	904	960	6.1
60%	1,419	1,506	1,598	1,696	1,799	6.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 지급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8] 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단가: 2025~2029년

(단위: 천원, %)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증가율
최저생계비(A)	32%	757	803	852	904	960	6.1
	60%	1,419	1,506	1,598	1,696	1,799	6.1
현행법 적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B)		450	481	515	551	590	7.0
추가 지급단가(A-B)	32%	307	322	337	353	370	4.7
	60%	969	1,025	1,083	1,144	1,209	5.7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 부칙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법 시행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에서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7년에 최저생계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함

[표 9] 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단가(단계적 인상 시): 2025~2029년

(단위: 천원, %)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증가율
추가 지급단가(A-B)	32%	112	225	337	353	370	34.7
	60%	361	722	1,083	1,144	1,209	35.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 중위소득의 32%(생계급여) 수준으로 보면 1조 4,925억원(연평균 2,985억원),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채무자 회생 기준 생계비) 수준으로 보면 4조 8,244억원(연평균 9,649억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수당 인상	32%	1,491	2,723	3,731	3,569	3,413	14,925	2,985
	60%	4,787	8,745	11,981	11,566	11,165	48,244	9,6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산정) 등 두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법 제6조제1항¹⁾에 따라 2023년 기준 94,593명의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여 수령하고 있으며, 현재 참전명예수당이 다른 보훈급여금에 비해 금액이 적어 대부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다른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경우, 다른 보훈급여금 수급자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선택할 수 있으나, 추계에서는 이로 인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수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음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3.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